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건축법」개정 및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정비(안 제36조)

- 건축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허가권자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 '1년에 2회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'로 바뀌었으나,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(반복)부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: 「건축법」

○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8494(2018. 10. 22)〕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8270(2018. 10. 18)〕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19. ~ 2018. 11. 8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